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대에는 범죄에 대해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사적 제재인 복수가 행하여졌다. 그러나 복수는 일회적인 제재에 그치지 않고 꼬리를 문 복수의 연쇄를 낳는다. 이러한 사적 복수가 공적 형벌로 ㉠ 대치된 것은 인류 문명이 이론 커다란 진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적 형벌은 국가가 완전히 독점하게 되었다. 끝없는 피의 복수는 법적 평화를 근본적으로 파괴한다는 점에서 공정한 중립적 권력으로서의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왜 형벌을 가하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관점을 살펴보자.

형벌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적으로, ‘악에 대한 악’으로서 부과된다는 ‘응보론’이 있다. 이러한 견해를 표명한 대표적인 사람은 칸트이다. 그는 이성적이고 자유로운 인간을 전제로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하라고 주장하였다. 형벌의 경우에도 인간에게 형벌을 가함으로써 다른 어떤 목적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인간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반대하였다. 따라서 형벌은 자기 목적적이어야 하며, 형벌의 질과 양은 저지른 해악과 똑같은 해악, 즉 응보로서의 ‘동해보복(同害報復)’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함으로써 일반인이 두려움을 느껴 범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형벌은 부과되는 것이라고 보는 ‘일반 예방론’이 있다. 근대적 형태의 일반 예방론은 벤담의 공리주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벤담은 인간을 쾌를 추구하고 불쾌를 피하는 존재로 ㉢ 상정하고, 쾌와 불쾌의 계산을 통해 쾌가 큰 방향으로 행위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였다. 범죄와 관련하여서도 ‘범죄를 통하여 얻는 쾌’와 ‘형벌을 통하여 얻는 불쾌’를 비교하여 헤아려 봄으로써 공리 계산을 하는 것이 인간이란 점을 이 이론은 전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형벌은 범죄자 자신이 장래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삶을 ㉣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과된다는 ㉤ ‘특별 예방론’이 있다. 플라톤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처벌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형벌은 범죄자 자신의 속죄, 개과천선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론의 입장에서 서 있는 사람들은 인간 행동의 결정 인자들은 행위자의 심리적 태도, 행위자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 등 여러 측면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를 토대로 이들은 범죄에 대한 대응책은 범죄자로부터 일정한 법익을 박탈하는 형벌이 아니라, 이러한 결정 인자의 제거 내지 개선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범죄자가 갖는 위험성이 개선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고, 개선 가능한 경우에는 범죄자의 심리나 사회적 환경의 교정,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한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하였다.

오늘날에는 이 세 가지 관점을 절충하여 형벌을 정당화하고 있다. 우선 응보론은 형벌 부과 대상과 형벌의 상한을 설정해 주는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이 상한의 범위 내에서 형벌의 종류와 내용을 구성하는 데는 일반 예방론과 특별 예방론의 관점이 원용되고 있다. 이렇듯 형벌의 목적에 관한 논의는 단순히 관념상의 관심사가 아니라 형사제도를 구성하고 ㉥ 윤용하는 데에 중요한 현실적 의미를 갖고 있다.

13. 위 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형벌 집행의 효과와 부작용
- ② 형벌 이론의 변천 과정과 현황
- ③ 형벌과 범죄 예방과의 상관관계
- ④ 국가에 의한 형벌권의 근거와 정당성
- ⑤ 형벌의 목적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의의

14. 위 글에 <보기>의 내용을 추가하려 할 때, 그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형벌은 사람들에게 그 사회의 법질서가 언제나 유지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 준다. 비록 범죄로 인하여 법질서가 침해될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형벌은 언제나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형벌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생각이 들게 하여 범죄 욕구를 억제한다는 것이다.

- ① 응보론의 입장에서 그 단점을 보완하는 데 활용한다.
- ② 일반 예방론의 관점을 옹호하면서 그 주장을 강화하는 데 활용한다.
- ③ 특별 예방론의 견해를 다른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데 활용한다.
- ④ 기존의 이론과 상반된 새로운 견해를 보여주는 데 활용한다.
- ⑤ 기존의 이론을 절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제시하는 데 활용한다.

15. <보기>에 대한 반응 중, ㉠과 관련이 깊은 것은? (3점)

<보 기>

15세인 오○○는 소년 가장이다. 2년 전 그의 부모님이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그는 노환으로 몸이 불편한 할머니와 두 동생과 함께 단칸방에서 살고 있는데, 국가에서 지급하는 생활 보조금으로는 할머니의 약값을 대기도 버거웠다. 어느 날 그는 배가 고프다고 조르던 동생들의 모습이 떠올라 자기도 모르게 가게에서 빵을 훔쳤다. 주인에게 발각된 그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기사화 되자 소년을 돕겠다는 도움의 손길이 줄을 이었다.

- ① 법의 적용에 예외를 두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소년이 범한 죄에 상응하는 형량을 부과해야 한다.
- ② 가게 주인이 입은 손해에 해당하는 만큼을 소년이 보상하게 하는 정도에서 서로 합의하게 해야 한다.
- ③ 다른 사람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소년은 법에 규정된 대로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 ④ 불우한 환경에서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주위의 도움이 있어 재범의 우려도 없으므로 훈방 조치해야 한다.
- ⑤ 소년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므로 소년으로 하여금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16.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 :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음.
- ② ㉡ : 일정한 책임이나 일을 부담하여 맡게 함.
- ③ ㉢ :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
- ④ ㉣ : 일을 꾸려 나감.
- ⑤ ㉤ : 무엇을 움직이게 하거나 부리어 씬.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64년에 발간된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형벌에 관한 논리 정연하고 새로운 주장들에 유럽의 지식 사회가 매료된 것이다.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베카리아는 충실히 호응하여,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하였다. 사람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어놓지는 않는다.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유의 일부를 떼어 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 누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하고,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 관리한다. 따라서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 할 법은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준수되며,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형벌이다. 이런 논증으로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출발점을 세웠다.

베카리아가 볼 때, 형벌은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 없다. 또한 인간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인 것도 아니다. 형벌의 목적은 오로지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있을 뿐이다. 이는 범죄로 얻을 이득, 곧 공익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지만 하면 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손익 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처벌 체계는 명확히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 집행의 확실성도 갖추어져야 한다. 결국 범죄를 ㉡ 가로막는 방벽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 울타리의 높이는 살인인지 절도인지 등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넘어서는 처벌은 폭압이며 불필요하다. 베카리아는 말한다. 상이한 피해를 일으키는 두 범죄에 동일한 형벌을 적용한다면 더 무거운 죄에 대한 억지력이 상실되지 않겠는가.

그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추어 제도가 운용될 것을 역설한다. 가장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되다 보면 사회 일반은 그에 ㉣ 무디어져 마침내 그런 것을 봐도 옥살이에 대한 공포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 인간의 정신에 ㉤ 크나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다. 죽는 장면의 목격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그 기억은 일시적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속죄하는 고통의 모습을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 더욱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주장이다.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도 말한다. 이처럼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여 휴머니스트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하여 공리주의자로,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의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사회 계약론자로 이해된다. 형법학에서도 형벌로 되갚아 준다는 응보주의를 탈피하여 장래의 범죄 발생을 방지한다는 일반 예방주의로 나아가는 토대를 ㉥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10. 윗글에서 베카리아의 관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공동체를 이루는 합의가 유지되는 데는 법이 필요하다.
- ② 사람은 이성적이고 타산적인 존재이자 감각적 존재이다.
- ③ 개개인의 국민은 주권자로서 형벌을 시행하는 주체이다.
- ④ 잔혹함이 주는 공포의 효과는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한다.
- ⑤ 형벌권 행사의 범위는 양도된 자유의 총합을 넘을 수 없다.

1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② 법률로 엮어 뚜렷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범죄가 유발하는 손실에 따라 높낮이를 정해야 한다.
- ④ 손익을 저울질하는 인간의 이성을 목적 달성에 활용한다.
- ⑤ 지키려는 공익보다 높게 설정할수록 방어 효과가 증가한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베카리아의 입장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형벌이 사회적 행복 증진을 저해한다고 보는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사형을 반대한다.
- ② 사형은 범죄 예방의 효과가 없으므로 일반 예방주의의 입장에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③ 사형은 사람의 기억에 영구히 각인되는 잔혹한 형벌이어서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인정하지 못한다.
- ④ 가장 큰 가치를 내어주는 합의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회 계약론의 입장에서 사형을 비판한다.
- ⑤ 피해 회복의 관점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형법학의 입장에서 사형을 무기 징역으로 대체하는 데 찬성하지 않는다.

13.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향유(享有)하기로
- ② ㉡: 단절(斷絶)하는
- ③ ㉢: 둔감(鈍感)해져
- ④ ㉤: 지대(至大)한
- ⑤ ㉥: 수립(樹立)하였다는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범죄란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타인의 육체나 정신에 고통을 주거나 재산 또는 명예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 사회의 안녕과 개인의 안전에 해를 끼친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논의를 통해 범죄 발생률을 낮추려고 노력해 왔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범죄학’이다.

㉠ ‘고전주의 범죄학’은 법적 규정 없이 시행됐던 지배 세력의 불합리한 형벌 제도를 비판하며 18세기 중반에 등장했다.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 범죄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자유 의지에 입각한 합리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범죄에 비해 형벌을 부과할 경우 개인의 합리적 선택에 의해 범죄가 억제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고전주의 범죄학의 대표자인 베카리아는 형벌은 법으로 ㉡ 규정해야 하고, 그 법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형벌의 목적은 사회 구성원에 대한 범죄 행위의 예방이며, 따라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누구나 법에 의해 확실히 처벌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범죄를 억제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러한 고전주의 범죄학의 주장은 각 국가의 범죄 및 범죄자에 대한 입법과 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19세기 중반 이후 사회 혼란으로 범죄율과 재범률이 증가하자, 범죄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한 ㉢ ‘실증주의 범죄학’이 등장했다. 실증주의 범죄학은 고전주의 범죄학의 비과학성을 비판하며,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자유 의지로는 통제할 수 없는 생물학적·심리학적·사회학적 요소에서 찾으려 했다. 이 분야의 창시자인 롬브로소는 범죄 억제를 위해서는 범죄자들의 개별적 범죄 기질을 도출하고 그 기질에 따른 교정이나 교화, 또는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그는 범죄자만의 특성과 행위 원인을 연구하여 범죄자들의 유형을 ㉣ 구분하고 그 유형에 따라 형벌을 달리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출생부터 범죄자의 기질을 타고나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범죄자의 경우 초범일지라도 무기한 구금을 해야 하지만,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수감에는 반대했고, 이러한 생각은 이후 집행 유예 제도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비록 차별과 편견이 개입됐다는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롬브로소의 연구는 이후 범죄 생물학, 범죄 심리학, 범죄 사회학의 탄생과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범죄학의 큰 흐름들은 범죄를 억제하려는 그동안의 법체계와 정책의 근간이 되어 왔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이러한 시도들의 범죄 감소 효과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환경에 의한 범죄 유발 요인과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 기회의 감소 효과 등을 연구하는 ‘환경 범죄학’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건축학이나 도시 설계 전문가들은 범죄의 원인과 예방의 해법을 환경과 디자인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로 ‘셉테드(CPTED)’라 불리는 범죄 예방 설계가 그것이다. 셉테드는 건축 설계나 도시 계획 등을 통해 대상 지역의 방어적 공간 특성을 높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 예방 전략을 의미한다.

셉테드는 다음의 원리로 이루어진다. 우선 ‘자연적 감시의 원리’는 공간과 시설물에 대한 가시권을 확보하고 잠재적 범죄자의 은폐 장소를 최소화시킴으로써 내부인이나 외부인의 행동을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다음으로 ‘접근 통제’의 원리는 보행로, 조경, 문 등을 통해 사람들의 통행을 일정한 경로로 ㉠ 유도하여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영역성의 원리’는 안과 밖이라는 공간 영역을 조성하여 외부인의 침범 기준을 명확히 ㉡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외에도 공공장소 및 시설에 대한 내부인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하여 그 근방의 범죄를 감소시킨다는 ‘활동의 활성화 원리’, 공공장소와 시설물이 처음 설계된 대로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한다는 ‘유지 및 관리의 원리’가 있다. 이 모든 원리는 범죄 예방의 전략과 목표를 범죄자 개인이 아닌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설계와 계획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즈음부터 셉테드를 도입하여 도시 설계와 건축물에 범죄 예방 설계 활동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법과 정책, 그리고 셉테드가 동시에 강화된다면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33.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상되는 반론을 반박하며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② 필자의 관점을 명시한 후 다른 관점과 비교하고 있다.
- ③ 핵심 개념의 가치와 효용을 비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통시적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다.
- ⑤ 두 이론의 장점을 절충하여 새로운 이론으로 통합하고 있다.

34.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법적 근거 없이 부과된 형벌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 ② ㉡은 범죄자들의 특성과 행위 원인을 바탕으로 범죄자의 유형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연구의 초점을 범죄의 처벌보다는 범죄의 원인에 두고 있다.
- ④ ㉠은 ㉡과 달리 범죄에 따른 형벌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이 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⑤ ㉡은 ㉠과 달리 인간의 자유 의지를 통해서도 범죄 욕구를 제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35. 윗글과 <보기>를 읽은 학생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합리적 선택이론'은 합리적 인간성을 기본 가정으로 하여 각각의 상황에 따른 잠재적 범죄자의 의사 결정 과정을 설명한다. 즉 잠재적 범죄자들은 개인과 주변 상황 등을 모두 종합해 범죄로 인한 이익과 범죄의 실패 위험을 비교한 후 범행의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가 발각될 환경적 요인이 강화될 경우 범죄 실행을 포기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 ① 베카리아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을 비판하겠군.
- ② 베카리아와 합리적 선택이론은 모두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의사 결정 과정을 중시하고 있군.
- ③ 롬브로소가 범죄자의 유형을 구분한 것은 합리적 선택이론에 의해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겠군.
- ④ 셉테드와 달리 합리적 선택이론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인간이 범죄를 유발한다고 보고 있군.
- ⑤ 셉테드와 합리적 선택이론은 모두 환경적 요인의 개선이 범죄 예방의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군.

36. [A]를 참고하여 <보기>의 사례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학교는 개교한 지가 오래돼 다소 음침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다. 이에 학교는 교내 외진 장소에 다양한 운동 시설을 설치해 학생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그곳에 CCTV를 설치했다. 사람들의 시선을 막고 있는 학교 담장은 철거하고, 대신 작은 나무와 꽃들을 심은 화단을 조성했다. 또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후문을 폐쇄하여 사람들의 통행을 정문으로 유도했고, 학생들과 교사는 환경지킴이라는 동아리를 조직하여 개선된 학교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봉사 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① 후문을 폐쇄한 것은 '접근 통제'의 원리를 통해 사람들의 통행을 정문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② 학교 담장을 허문 것은 '자연적 감시의 원리'를 통해 학교 시설물에 대한 가시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③ 봉사 동아리를 조직해 운영하는 것은 '유지 및 관리의 원리'를 통해 환경 설계 효과를 지속시키려는 것이다.
- ④ 다양한 운동 시설을 설치한 것은 '활동의 활성화 원리'를 통해 외진 장소에서의 범죄 발생률을 낮추려는 것이다.
- ⑤ 교내 외진 장소에 CCTV를 설치한 것은 '영역성의 원리'를 통해 안과 밖이라는 공간 영역을 명확하게 확립한 것이다.

37.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고쳐야 ② ㉡: 나누고 ③ ㉢: 높이는
- ④ ㉣: 이끌어 ⑤ ㉤: 세우는

[37~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규칙을 만든다. 여러 규칙 중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지고 강제성을 가진 규칙을 **법**이라고 한다. 이때 강제성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할 때만 발휘될 수 있다. 이러한 법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 법은 행동의 결과를 중시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행동을 평가할 수 있고 그 변화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만약 법이 없다면 권력자나 국가 기관이 멋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은 최소한의 간섭만 한다. 개인이 처리해도 되는 일까지 법이 간섭한다면 사람들은 숨이 막혀 평온하게 살기 힘들 것이다.

대표적인 법에는 ㉠ 민법과 형법이 있다. 민법은 국가 기관이 아닌, 사람들 간의 권리관계를 다루는 법률로서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근대 사회에서 형성된 민법의 원칙은 오늘날까지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중요 원칙 중 하나는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해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를 비롯한 단체나 개인은 다른 사람의 사유 재산 행사에 간섭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는 그 행위가 위법이고 동시에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도 있다. 그런데 이 원칙들은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여 20세기에 들면서 제한이 생겼다. 그 결과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지배는 여전히 보장되지만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수정된 원칙들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 '죄형법정주의'라는 기본 원칙이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의 행위와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을 미리 법률로 정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범죄 발생 당시에는 없었던 법이 나중에 생겨도 그것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 또한 민법과 달리 어떤 상황을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상황을 규정한 법규를 유추하여 적용할 수도 없다.

형법을 위반한 범죄가 발생하면, 먼저 수사 기관이 수사를 한다.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로는 고소, 고발, 인지가 있는데, 이 중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반면 고발은 제3자가 한다. 일반적으로 범죄는 수사기관이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은 수사를 진행했다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수사 결과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구속 영장을 받아 체포해 구속한다. 만약 범죄를 실행 중인 경우는 구속 영장 없이 체포 가능한데, 이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신청해야 하고, 법원은 신청서가 접수된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재판을 청구하는데 이를 기소라고 한다. 이때 검사는 피의자의 나이, 환경, 동기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기소로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은 사건을 심리하여 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유죄를 선고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법원이 형을 선고하고 집행 절차에 들어간다.

[A]

그런데 만약 동물이 위법한 행동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동물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법에서는 인간 이외의 것들은 생명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물건으로 보는데 물건에는 법적 권리가 없다. 법적 권리가 없는 것은 의무와 책임도 없다. 그러므로 동물은 민, 형법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다만 손해를 입은 사람은 민법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 피의자: 수사 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게 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자.
- * 심리: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나 법률적 판단을 심사하는 행위.
- * 점유자: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37. **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만든다.
- ② 권력자의 권력 행사를 제한하여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 ③ 법의 간섭이 지나치게 커지게 되면 개인이 삶을 평온하게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 ④ 다른 사람들이 행동을 평가하고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결과를 중시한다.
- ⑤ 목적이 공익과 무관하더라도 사회 구성원의 동의가 있다면 강제성이 발휘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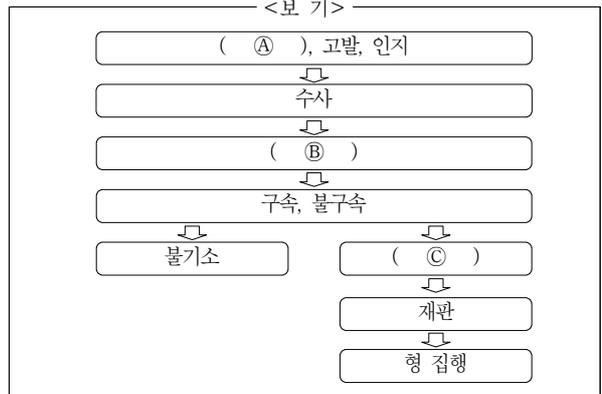
3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제적 강자로부터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칙이 수정되었다.
- ② 국가 기관이 아닌 사람들 간의 권리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적용한다.
- ③ 위법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의도적으로 잘못을 한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④ 20세기에 들면서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 ⑤ 개인이 재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가나 타인이 간섭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근대 사회에서 형성되었다.

39. ㉡과 관련 있는 말로 적절한 것은?

- ① 착한 사람은 법이 필요 없고 나쁜 사람은 법망을 피해 간다.
- ② 법의 생명은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있다.
- ③ 형법의 반은 이익보다는 해를 끼치지 모른다.
- ④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 ⑤ 철학 없는 법학은 출구 없는 미궁이다.

40.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는 범죄의 피해자와 연관이 있는 제3자가 한다.
- ② 명예훼손죄, 폭행죄는 A가 없어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 ③ 범죄를 실행 중인 범인을 B하였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④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반드시 C를 해야 한다.
- ⑤ 재판에서 심리를 담당하는 주체가 C의 여부를 결정한다.

41. 윗글과 <보기 1>을 참조하여 <보기 2>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1> —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보 기 2> —

A는 사고로 몸의 대부분을 기계로 대체해 로봇같이 보이지만 여전히 직장생활을 하고 세금을 내는 등 이전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B는 C가 구입한 로봇으로 행동과 걸모습이 인간과 구별이 안 된다. 그런데 만약 A와 B가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하였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 ① 민법 제759조 ①에 따르면 B는 동물과 같이 물건이므로 법적 책임이 없다.
- ② 민법 제759조 ①을 유추하여 적용한다면 B의 점유자인 C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③ 형법 제257조 ①에 따르면 A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해당하므로 형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 ④ 형법 제257조 ①을 유추하여 적용한다면 C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⑤ 형법 제257조에 향후 B가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더라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B를 처벌할 수 없다.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률로 어떤 행위가 형법상 범죄 행위로 성립하려면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순차적으로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성립 요건인 구성 요건 해당성은 어떤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형법상 규정된 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구성 요건으로 행위와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성 요건상 행위와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두 번째 성립 요건인 위법성은 전체 법질서에 위배된다는 가치 판단으로, 어떤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면 일반적으로 위법성이 추정된다. 하지만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더라도 예외적으로 위법성을 소멸시키는 사유인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타인에 대한 폭력이 형법에 규정된 위법성 조각 사유 중 하나인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 성립 요건인 책임은 행위자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다는 성질을 의미한다. 어떤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도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지 않다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때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인 책임 조각 사유 역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예로 강요된 행위가 있다.

형법에서 다루는 범죄는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나눌 수 있다. 고의범은 행위자가 죄를 범할 의사를 가지고 저지르는 범죄로,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마음속의 의사를 가지고 행동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 역시 고의범에 포함하고 있다. 형법에서 다루는 범죄는 고의범이 대부분이지만, 실수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죄를 범할 의사는 없지만 부주의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과실로 인한 범죄인 과실범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정을 두어 처벌하고 있다.

과실은 결과 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의 유무와 형법상의 과실범 규정에 따라 그 유형을 나눌 수 있다. 먼저 인식의 유무에 따라 과실의 유형을 나누면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로 나눌 수 있다. 자동차 운전 중 통화를 하다가 정지신호를 보지 못하고 통과하던 중 교통사고를 ㉠ 일으킨 경우, 운전 중 통화 행위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운전자의 행위는 인식 없는 과실에 해당한다. 그러나 운전 중 통화 행위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인식했지만 주의해서 운전하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통화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운전자의 행위는 인식 있는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두 과실은 형법상 취급에는 차이가 없고 과실범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 두 과실을 구분함으로써 인식 있는 과실을 미필적 고의와 구별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과실은 형법상의 과실범 규정에 따라 ㉢ '통상의 과실', ㉣ '업무상 과실', ㉤ '중과실'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은 법정형에 차이가 있다. 업무상 과실은 업무가 계속적·반복적인 수행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

의무를 위반하는 통상의 과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한다. 이 경우 업무는 결과 발생 야기 행위의 내용이어야 하며 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중과실은 통상의 과실에 비해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경우, 즉 극히 근소한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통상의 과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한다.

33. 밑줄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였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볼 수 없다.
- ②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가 없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도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 ③ 어떤 행위가 형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면 범죄로 볼 수 없다.
- ④ 어떤 행위가 형법상 범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 성립의 세 가지 요건을 순차적으로 모두 충족해야 한다.
- ⑤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 행위와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 구성 요건상 행위와 결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34.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의는 과실보다 부주의로 인해 죄를 범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 ② 과실은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유무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 ③ 결과 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유무가 고의와 과실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 ④ 고의와 과실은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유무와 그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 유무 모두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⑤ 행위자가 자기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의 유무에 따라 그 행위가 고의와 과실로 구별되기 때문이다.

3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업무로 인한 결과 발생 가능성을 얼마만큼 예견했는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진다.
- ② ㉢과 ㉣은 주의의무에 대한 태만의 정도 차이를 기준으로 나뉜다.
- ③ ㉣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행으로 인해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 ④ ㉣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한다.
- ⑤ ㉢~㉣은 형법상 과실 행위를 세분화한 것으로 법정형에 차이가 있다.

36. 윗글을 참고했을 때, <보기>의 판결문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 씨(건주)는 자신의 의류 매장에서 반려건을 키우고 있었다. A 씨는 ○월 ○일 11시에 자신의 매장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과 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A 씨의 반려건이 밖으로 나갔다. 이때 지나가던 B 씨에게 A 씨의 반려건이 달려들었고, B 씨는 A 씨의 반려건에게 물려 상해를 입게 되었다. A 씨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반려건이 매장 밖으로 나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손님과의 다툼으로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한 판결은 다음과 같다.

[판결문]

피고인(A 씨)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서 건주로서 반려건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풀어놓고 출입문의 잠금 상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B 씨)에게 상세 불명의 신체 부위에 상처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 ① A 씨가 반려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해 A 씨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겠군.
- ② A 씨가 반려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식한 점은 과실범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쳤겠군.
- ③ A 씨가 손님과의 다툼으로 반려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책임 조각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겠군.
- ④ A 씨가 반려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해 B 씨가 상해를 입게 된 점을 형법상 규정된 범죄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겠군.
- ⑤ A 씨가 반려건에 대한 관리 소홀로 타인을 다치게 하여 벌금형을 받은 점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겠군.

37. ㉔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동생이 학교에서 말썽을 일으켰다.
- ② 말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가고 있다.
- ③ 그는 넘어지자마자 재빨리 몸을 일으켰다.
- ④ 선풍기는 전기를 동력으로 삼아 바람을 일으킨다.
- ⑤ 우리는 무너진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 17 LEET 언어이해 1~3번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넓은 바다에서 여러 사람을 태운 배가 난파하였다. 바다에 빠진 선원 A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널판을 발견하였다. 널판은 한 사람을 겨우 지탱할 만큼밖에 되지 않았다. 선원 A가 널판으로 헤엄쳐 갈 때, 마침 미처 붙잡을 만한 것을 찾지 못한 선원 B도 널판 쪽으로 헤엄쳐 왔다. 선원 A와 선원 B는 동시에 그 널판을 붙잡게 되었다. 두 사람이 계속 붙잡고 있다가는 널판이 가라앉을 것이기 때문에 선원 A는 둘 다 빠져 죽을까 걱정하여 선원 B를 널판에서 밀어내었다. 선원 B는 결국 물에 빠져 죽었고 선원 A는 구조되었다. 이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카르네아데스가 만든 가상의 사건 ‘카르네아데스의 널’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이다. 이 사례는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가 되지만, 형법상 처벌되어야 하는지도 따져 볼 만하다.

범죄는 ‘(1)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2) 위법하며, (3) 유책한 행위’라고 정의된다.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중 구성요건이란 형벌을 부과할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를 형법에 유형화하여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이 구성요건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이 구성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위법하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때가 있다. 잘 알려진 것으로는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현재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법이 불복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생명과 같이 대체할 수 없는 큰 법익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재산과 같은 법익을 희생시킨 일을 가지고 사회적인 해악을 일으킨 위법한 행위라 하지 않는 것이다. 긴급피난은 꼭 위법한 침해 행위로 일어난 위난에 대하여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다르다.

앞의 사례에서 선원 A와 선원 B가 동시에 널판을 잡은 행위는 저마다의 생명을 생각할 때 불가피한 일이었다. 이 상황은 선원

A의 입장에서 급박한 위난이었고, 선원 A의 이어진 행위는 위난을 피하는 데 절실한 것이었다. 이러한 선원 A의 행위에 대해 ㉠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이나, ㉡ 긴급피난이 성립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파악하는 이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어느 쪽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우선 정당방위의 요건을 생각할 때 위난에 빠진 선원 B의 행위에 대한 선원 A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으며, 또한 긴급피난이 성립하려면 보호한 법익이 침해한 법익보다 훨씬 커야 하는데 이 사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선원 A에게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책임’이라고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범죄는 유책한 행위, 곧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여야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책하지 않은 행위를 들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위법성은 개인의 행위를 법질서와의 관계에서 판단하는 것이어서, 행위자 개인의 특수성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형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 개인을 비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책임의 문제이다. 형법상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의 문제인 것이다.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 말고 다른 행위를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기대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적절한 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도 위법한 행위를 한 데에 대하여는 윤리적인 비판뿐만 아니라 법적인 비난이 가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카르네아데스의 널’을 재구성한 사례에서 선원 A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쪽을 선택하였다면 승고한 선행임에 틀림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데 대하여 윤리적인 비판은 몰라도 법적인 비난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사례**에 관한 엇글의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선원 A나 선원 B의 행위는 모두 위난을 벗어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② 선원 B가 만약 선원 A를 밀어 빠져 죽게 하였다면 그 행위는 범죄가 된다.
- ③ 선원 A와 선원 B의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선원 B에 대한 선원 A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형법상 비난받지 않는 것이다.
- ⑤ 선원 A가 선원 B를 살리는 선택을 하였더라도 그것을 윤리적으로 드높은 덕행이라 할 수 없다.

2. ㉠, ㉡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선원 B의 행위가 위법한 침해라고 주장할 것이다.
- ② ㉠은 선원 A의 행위가 현재 자기에게 닥친 침해를 해결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 ③ ㉡은 선원 B의 행위가 위법한 침해라고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
- ④ ㉡은 선원 A의 행위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는 그의 책임에 대한 문제까지 따져야 결정될 것이라고 볼 것이다.
- ⑤ ㉠과 ㉡은 모두 선원 A의 행위가 현재 직면한 위난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고 볼 것이다.

3. 위글에 따를 때, 선원 A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책임을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원 A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형법상 책임이 있다는 것은 적법한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전제하기 때문에, 선원 A는 책임이 있다.
- ③ 선원 A의 책임 유무를 따지는 것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남의 생명을 침해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 ④ 유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선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따지지 않고 책임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 ⑤ 선원 A의 행위가 위법한지는 따져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위법성은 행위에 대한 법규범적 판단인 데 반하여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윤리적인 비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17년 10월 고3 27~31번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㉔ 인공호흡기가 1대밖에 없는 병원에 동등하게 살아남을 기회를 가진 2명의 환자가 동시에 실려 왔다. 한 사람은 출산을 앞둔 여성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녀의 남편이다. 치료 의무가 있는 담당 의사는 인공호흡기가 1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중 한 사람을 치료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복수의 의무가 서로 충돌하여 행위자가 하나의 의무만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긴급 상황에서, 하나의 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호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무 충돌이라 한다. 의무 충돌 상황에서 의무는 법적 의무이어야 하며, 행위자는 의무 충돌 상황을 야기한 책임이 없어야 의무 충돌이 성립한다. 의무는 특정 행위를 해야 할 작위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부작위 의무로 구분된다. 작위란 행위자가 신체적 힘을 이용해 자연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변경을 가한 경우를 말하며, 부작위는 변경시킬 수 있지만 아무런 신체적 힘을 투입하지 않고 사건이 벌어질 것을 방치한 것을 말한다. 가령 위의 응급 상황에서 담당 의사가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지 않는 부작위가 일어났다면 의사는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작위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의무가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은 부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 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 작위 의무 대 작위 의무의 충돌 형식을 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세 가지 충돌 형식들이 모두 의무 충돌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 형법학자들은 ㉑ 부작위 의무 간의 충돌은 의무 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한편, 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의 충돌은 견해에 따라 의무 충돌이 아니라 긴급 피난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긴급 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다. 이때 법익이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고, 위난이란 법익에 대한 위협 있는 상태를 말한다. 운전 중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㉒ 피하러 했는데, 좌측은 낭떠러지였기 때문에 급히 핸들을 우측으로 ㉓ 꺾어 건물 일부를 파손하는 행위는 긴급 피난으로 볼 수 있다. 긴급 피난으로 인정되면 벌하지 않는다. 이를 의무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타인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작위 의무와 타인의 재산을 파괴하면 안 된다는 부작위 의무의 충돌 상황에서 핸들을 꺾는 작위에 의해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의 충돌은 긴급 피난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의무 충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는 것이다.

의무 충돌과 긴급 피난은 모두 긴급 상황에서 한쪽의 법익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한쪽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의무 충돌 자체가 긴급 피난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의무 충돌과 긴급 피난은 의무의 범위를 작위 의무로 한정하면 그 차이점이 분명해진다. 긴급 피난은 위난을 제3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위난을 감수함으로써 법익 충돌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반해, 의무 충돌은 그와 같은 가능성이 없다. 즉 앞선 사례에서 운전자는 핸들을 우측으로 꺾지 않고 좌측으로 꺾어 자신의 법익을 희생함으로써 법익 충돌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앞서 언급한 담당 의사에게는 그와 같은 가능성이 없다. 또한 행위자가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작위에 의해 법익 침해가 이루어지는 긴급 피난과 달리, 의무 충돌은 행위자가 사건이 벌어질 것을 방치하는 부작위에 의해 법익 침해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의무 충돌은 대개의 경우 작위 의무 간의 충돌을 ㉔ 뜻한다.

31. ㉠ ~ ㉡의 문맥적 의미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이곳에서 암전히 몸을 피하고 있어라.
- ② ㉡: 그녀는 자신의 의지를 꺾어야 했다.
- ③ ㉢: 모든 일이 뜻하는 대로 되면 좋겠다.
- ④ ㉣: 차라도 한잔 나눌 수 있으면 한다.
- ⑤ ㉤: 사람을 일러 흔히 사회적 동물이라 한다.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하는 조건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 배제법칙, 전문법칙 등의 세 가지 원칙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㉔ 이 원칙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여 공평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에 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㉕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으로, 형사사법기관의 위법한 증거수집을 억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수집한 파생증거, 곧 2차 증거의 증거능력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배제된다. 이를 독수과실이론이라 하는데,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가 독에 오염된 나무라면 그로부터 수집된 2차 증거는 그 나무에 달린 독 열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영장 없이 위법하게 체포한 상태에서 얻은 진술이라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은 물론, 그 진술의 도움으로 찾아낸 물증의 증거능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와 2차 증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자백배제법칙은 수사 기관이나 법원이 진술자의 자백을, 임의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얻어낸 경우에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이다. 자백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수사 방법이 ㉖ 자백을 얻어 내는 데에만 의존하게 되면 인권 침해의 우려가 커지며 때로는 진실을 밝히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에 자백배제법칙은 자백의 주체가 신체적, 정신적 압박 없이 임의로 한 자백만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하여,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전문법칙은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칙이다. 전문 증거란 피고인, 증인 등 사안을 체험한 자가 구두로 진술한 진술증거 가운데 법정에서 직접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해 간접적으로 전해진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전문증거에는 구두로 전하는 전문진술과 서류인 전문서류가 있다.

전문증거는 진술증거를 전하는 사람에 의한 편집, 조작의 [A] 우려가 있다는 점,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수 없다는 점,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법관이 법정에서 진술자에게 직접 묻고 답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언어적 정보를 획득할 수 없다는 점 등이 ㉗ 전문법칙의 근거로 꼽힌다. 다만 전문증거임에도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이를 '증거동의'라고 한다.

한편 증명력은 증거능력과는 달리 증거자료가 사실의 판단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즉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로서의 신빙성을 뜻한다. 증명력 평가는 증거가치가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를 따지는 것으로, 증거능력 평가가 증거능력의 유무만을 가리는 것과는 구별된다. ㉘ 증거능력이 있다고 해서 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증명력이 있다고 해서 증거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증명력 평가는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겨져 있는데, 이러한 원칙을 ㉙ 자유심증주의라 한다.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가 제출되면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따른다. 이때 법관의 판단은 합당한 근거를 배경으로 해야 하며, ㉚ 단순한 자의적 판단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은 자유롭게 증거를 취사선택할 수 있고, 모순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어느 증거를 믿는가도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겨진다. 신빙성이 없는 증인의 증언이라 할지라도 법관은 일정 부분의 증언을 골라내어 믿을 수도 있다.

*임의: 자기 의사대로 처리하는 일.

◆ 21년 4월 고3 5~10번

[5 ~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형사소송법은 범죄사실은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며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증거재판주의라 한다. 이는 법관의 자의적인 사실 인정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으로, 공평하고 객관적인 형사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증거는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구별하고 있다.

먼저 증거능력이란 어떤 증거가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는 법정에서 주요한 사실 인정의 자료로 이용되어 이를 바탕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원칙적으로 사실 인정의 자료로 쓰일 수 없다.

증거능력의 요건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형사소송법은

5. 밑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증명력 판단의 주체
- ②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 ③ 자백배제법칙의 종류
- ④ 독수과실이론의 적용 사례
- 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목적

6. ㉠을 보여 주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피고인을 강요하여 얻은 자백이 사건의 진실을 그대로 담고 있는 내용인 경우
- ② 수사 기관에 의해 수집된 증거가 법정에서 결국 유죄 판결의 핵심적인 근거로 이용된 경우
- ③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문서이지만 그 내용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
- ④ 불법적인 수단으로 목격자의 진술을 억지로 얻어냈지만 결국 진술 내용이 허위 사실로 밝혀진 경우
- ⑤ 증거동의를 받은 전문증거가 객관적 사실을 밝히는 결정적인 단서를 담고 있다고 법원에 인정된 경우

7. <보기>는 밑글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지의 일부이다. 밑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 사건 요지
피고인은 소지가 금지된 화약류를 허가 없이 소지하여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됨.
- 수사 기관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

[증거 1] 유효한 압수수색영장 없이 압수한 화약류
[증거 1-1] 증거 1을 기초로 획득한 압수물 사진
[증거 2]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자백 진술
[증거 3] 법정에서 이루어진 목격자 증인의 진술
- 법원 판결 요약
[증거 1]은 사실 인정의 자료로 쓰일 수 없고, 이에 [증거 1-1] 또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그 외 [증거 2], [증거 3] 등의 적법하게 수집되어 사실 인정의 자료로 쓰일 수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① 법원은 [증거 1]과 [증거 1-1]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겠군.
- ② 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증거 1]과 [증거 1-1]을 자료로 사용했겠군.
- ③ 법원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하여 [증거 1-1]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겠군.
- ④ 법원은 [증거 2]가 신체적, 정신적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했겠군.
- ⑤ 법원은 진술증거인 [증거 2]와 [증거 3]을 전문증거가 아니라고 보았겠군.

8. [A]를 바탕으로 다음의 ㉠과 ㉡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형사소송법은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진술 당시와 그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원래의 진술이 고스란히 법정에 전달되었을 것으로 믿을 수 있을 때, 그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예컨대 ㉠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래의 진술 및 그와 동일한 수준의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전문증거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진술을 필요로 하는 자가 사망, 질병, 행방불명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진술을 담은 전문증거가 이에 해당된다.

- ① ㉠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원래의 진술이 담긴 전문진술이기 때문에 전문법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겠군.
- ② ㉡가 전문법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원래의 진술이 법정에서 전달될 때 다른 사람에 의해 편집, 조작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겠군.
- ③ ㉠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법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겠군.
- ④ ㉡가 전문법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법원이 진술자와의 문답을 통해 원래의 진술과 동일한 수준의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겠군.
- ⑤ ㉠과 ㉡는 모두 피고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법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겠군.

9. 자유집중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증거가 사실의 판단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는 법원의 자유 판단에 따른다.
- ② 법원은 신빙성 없는 증인에 의한 증언도 증거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 중에서 범죄사실을 판단하는 데 활용할 증거를 선택할 수 있다.
- ④ 증거가치가 크고 작은 정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합당한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 ⑤ 법원에 의해 서로 모순된다고 판단된 증거들은 어느 쪽도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로서의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10. 밑글을 읽은 과정에서 문맥을 고려할 때, ㉠ ~ ㉣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하는 조건에 대해 규정한 법칙들의
- ② ㉡: 증명 자료로서 필요한 법률상 자격을
- ③ ㉢: 진술자의 임의성을 지키는 데에만 의존하게 되면
- ④ ㉣: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근거로
- ⑤ ㉤: 단순히 자의적으로 증거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 25 경찰대 1차 21~25번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실제 상황에서 목격할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의 고지’를 하는 장면이 곧잘 나온다. 이제는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 이 ‘미란다 원칙’은 언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 확립된 것일까?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어네스트 미란다는 어린 시절을 불우한 환경에서 여러 범죄를 저지르며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20대의 히스패닉계 청년이다. 어느 날 아침에 그의 집에 두 명의 경찰관이 찾아온다. 열흘 전 썸 애리조나 주 사막에서는 납치 및 강간 사건이 발생했고, 경찰은 그를 용의자로 지목한 상태였다. 경찰관은 그에게 신분 확인을 요청한 후 경찰서에 나와 진술해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는 순순히 동의하며 경찰과 동행했다.

미란다와 관련하여 여러 정황이 의심스러웠지만 핵심적인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없었다. 범죄 피해자나 목격자가 진술한 범인과 용의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인 범인 식별 절차에서 피해자는 범인을 알아보지 못했다. 경찰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 절차를 마치고 경찰관이 조사실에 다시 왔을 때, 그곳에서 혼자 기다리던 미란다가 불안해하며 결과가 어떤지를 물었다. 경찰관은 짐짓 그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겼음을 암시했다. 미란다는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되었을 것으로 짐작하고는 자백하겠다고 밝혔다. 조사실에는 변호사나 목격자가 없었고, 대화 내용은 녹음되지 않았다. 미란다가 신문하면서 경찰관은 일정한 양식의 서류를 내밀었다. 거기에는 자의에 의해 협박이나 강요, 이익의 약속 없이 진술했음을 선서하며, 피의자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고 써 있었다. 미란다는 거기에 진술 내용을 자세히 적고 자신의 이름과 사인을 했다. 자백한 지 얼마 안 되어 미란다는 다른 강도 및 강간, 강간 미수 사건들을 추가로 자백했다.

애리조나 주 마리코파 구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다. 대개 이런 재판은 하루만에 마치고 뻘한 결론에 이르곤 했다. ㉠ 국선 변호인 무어는 증인으로 나선 경찰관에게서 조사 중 진술의 임의성을 확인하기 위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이끌어내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 재판의 검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경찰관의 훌륭한 자질에 비추어볼 때 그들이 피고인의 권리를 빼앗은 적이 없고 피고에게 그러한 권리를 고지하는 것이 불필요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경찰의 조사 과정에 다시 의문을 제기했지만, 배심원들은 검사의 말에 공감한 것으로 보였다. 평의를 마친 후 그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하였으며, 판사는 장기형을 선고했다.

그 후 이 재판은 주 대법원에 상고되었다. 자술서의 임의 진술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 1965년 애리조나 주 대법원은 미란다가 조사 과정에서 권리 고지를 받았고 변호인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의 도움받을 권리를 거절당한 사실도 없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다시금 확인했다.

1966년까지 연방대법원은 자백의 허용성을 검토할 때 적정 절차 조항에 근거를 둔 임의성 기준에 따랐다. ‘임의성’이 있는지를 ‘사정의 전체’를 살펴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 임의성에 대한 주장과 입증은 피의자와 경찰에게 맡겨졌다. 이는 본질적으로 수사 기관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었다. 1965년 11월 연방대법원은 미란다 판결을 심리하기 위한 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 1966년 1월 28일 연방대법원 상고심에서 피고를 변호한 존 플린은 구두 변론을 담당하며 다음 두 가지에 초점을 두었다.

첫째, 대부분의 미국 시민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 두고자 하였다. 둘째, 권리 고지를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언제 권리 고지를 하는지가 중요함을 확실히 밝혀두고자 하였다. 플린은 미란다가 조사를 받으면서 자백을 받기 전에 묵비권과 변호인 선임권, 변호인과 상의할 권리를 고지받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는 피의자 단계에서부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수정헌법 제5조의 권리를 확대하여 당사자 지위를 갖출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변론했다. 이 말은 미란다가 조사를 받았을 때 그가 경찰과 대립하는 당사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 시점에 이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었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 주장은 매우 대담한 것이었다. 이전까지 법원은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수정헌법 제6조의 보호 아래 재판 전 변호인 선임권을 부여해 왔으며 형편이 안 되는 피고인을 위해 국선 변호인을 두게 하였다. 그런데 플린은 이 권리가 피의자의 체포, 조사 과정에서부터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수정헌법 제5조에 근거하여 주장했던 것이다. **이때가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 1966년 7월 13일 열린 상고 허가심에서 연방대법원은 '미란다 원칙'을 채택하고 헌법적 근거를 찾음에 있어 수정헌법 제6조가 아닌 수정헌법 제5조를 선택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구속된 사람은 반드시 신문 전에 묵비권이 있음과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지해야 한다. 또한 변호인 선임권이 있고, 조사받는 동안 변호인과 상의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형편이 안 되면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해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해야 한다. …… 질문하기 전에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질문을 중단해야 한다. 피의자가 원한다면 변호인이 참여하기까지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 …… 구속된 상태에서는 이러한 특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음과 변호인 선임권이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그 후에 진술하도록 해야 한다." 플린이 그 역사적 순간에 밝혔던 '미란다 원칙의 고지'의 내용이었다.

21.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미란다는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성장하며 여러 건의 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
- ② 경찰이 범죄 피의자로 미란다를 지목해 찾아왔을 때, 그는 자의에 의해 경찰서로 동행하였다.
- ③ 경찰은 미란다에게 자술서를 쓰게 했으며, 미란다는 자의에 의해 자술한다는 자술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
- ④ 애리조나 주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권리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변호인의 이익제기를 수용하였다.
- ⑤ 연방대법원은 기존에 인용해 왔던 수정헌법 제6조 대신 수정헌법 제5조에 근거하여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을 재평가하였다.

22. 밑글에 따를 때, '미란다 사건'을 다룬 연방대법원 재판의 핵심적인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하급심 판사의 형량 산정은 적정했는가
- ②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았는가
- ③ 증인은 범인의 범죄 사실을 명확히 증언했는가
- ④ 피의자는 당사자로서 법적 권리를 보장받았는가
- ⑤ 대법원 판결은 수정헌법의 정신을 위배하였는가

23. 진술의 임의성과 관련하여 미란다 사건에 대해 각 주체가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 피의자가 자의에 따라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기에 진술의 임의성이 침해되었다.
- ② ㉡ : 경찰관은 강요하지 않았고 피의자는 자의로 진술했으므로 진술의 임의성이 침해되지 않았다.
- ③ ㉢ :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요구하지 않았고 진술서에 기록된 피의자 권리를 확인한 후 서명했으므로 진술의 임의성이 있다.
- ④ ㉣ : 경찰은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 피의자 권리를 고지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진술의 임의성을 침해했다.
- ⑤ ㉤ : 경찰은 적정절차 조항을 지켜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았고 사정의 전체를 고려했을 때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거부한 것이므로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4. 밑글의 맥락으로 볼 때, 이때가 역사적인 순간이었다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형사 피고인의 권리가 최초로 법령에 규정된 순간이었다.
- ② 적법하지 않은 수사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순간이었다.
- ③ 법원이 피고측 변호인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순간이었다.
- ④ 피의자가 보장받아야 할 법적 권리가 처음으로 법원에서 공론화된 순간이었다.
- ⑤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법적 조력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25. 밑글에 따라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기> —

우리 헌법은 묵비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 실무 차원에서 보면, 피의자의 묵비권이라는 권리와 이율배반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피의자의 자백이 의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 ① 현실이 법을 따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 ② 많은 피의자들이 자신의 진술이 가져올 법적 판단의 결과나 파장을 잘 알지 못한다.
- ③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피의자들은 자백이 자신에게 더 유리할 것이라는 착각을 한다.
- ④ 묵비권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피의자의 대부분은 범죄자이다.
- ⑤ 피의자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백을 선택한다.